

조선총독부 포교규칙 전문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1. 해설 및 자료

조선총독부 포교규칙은 일제가 조선의 종교단체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목적으로 제정하여 1915년 8월 16일자 조선총독부관보 제911호에 공포한 조선총독부령 제83호이다. 이 포교규칙은 일부가 개정되어 1920년 4월 7일자 조선총독부관보 제2294호에 조선총독부령 제59호(포교규칙중개정)로 공포되었다. 개정의 이유는 종교에 대한 통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규칙에 따라 모든 종교단체들의 포교관리자들은 선교사들과 내국인 사역자들이 펼치는 포교, 포교소설치, 포교소담임자 선정, 포교소담임자변경, 포교소소재지주소, 포교소소재지변경, 포교자폐지 혹은 포교소폐지 등에 관한 일체를 의무적으로 신고(届出)했어야했다.

한국교회는 일제탄압의 한 상징인 이 포교규칙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1910년부터 1945년 해방 때까지 있었던 많은 양의 역사자료들을 얻게 된다. 조선총독부 포교규칙 전문은 다음의 자료들에서 발견된다.

- (1) '조선포교규칙 해설.' <매일신보> 1915년 8월 19일.
- (2) 국가기록원. '포교규칙.' 생산기관: 미상, 생산년도: 1922년, 관리번호: CJA0004759.
- (3)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 제911호 154-155쪽, 1915년 8월 16일; 제2294호 59-60쪽, 1920년 4월 7일.
- (4) 기독교대한감리회. <신학세계> 창간호. 1916년 2월, pp. 175-178.
- (5) 김승태 편역.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사 자료집> 한국기독교 역사 연구소, 1996년.

(6) 성결교회역사연구회, <일제시대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 선교현황> 제네시스미디어, 2010년, pp. 15-19.

(7) 이용호. <한국성결교회의 역사> 제3권. 서울: 성결문화사, 2000년, pp. 51-54.

2. 포교규칙 전문

포교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함.

제1조: 본령에서 종교라 칭함은 신도(神道), 불도(佛道) 및 기독교를 위(謂)함.

제2조: 종교선포에 종사코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구비하여 포교자가 될 자격을 증명할 문서 및 이력서를 첨부하여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함. 단 포교관리자를 둔 교파, 종파 또는 조선 사찰에 속한 자에게는 제2호의 사실을 생략할 수 있다.

1. 종교 및 그 교파, 종파의 명칭
2. 교의의 요령
3. 포교의 방법

전항 각호에 든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10일내로 조선 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3조: 신도, 각 교파 또는 내지(內地)의 불교 각 종파에서 포교를 하고자 할 때는 그 교파 또는 종파의 관장은 포교관리자를 정하고 다음의 사항을 구비하여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종교 및 그 교파, 종파의 명칭
2. 교규(教規) 또는 종제(宗制)
3. 포교의 방법
4. 포교관리자의 권한
5. 포교자 감독의 방법
6. 포교 관리사무소의 위치
7. 포교 관리자의 씨명 및 그 이력서

전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코자 할 때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조선총독은 포교의 방법, 포교 관리자의 권한 및 포교자 감독의 방법 또는 포교 관리자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변경을 명령할 수도 있다.

제5조: 포교관리자는 조선에 거주하는 자이어야 한다. 포교관리자는 매년 12월 31일 현재에 의하여 소속 포교자 명부를 작성하여 익년 1월 31일까지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전항의 명부에는 포교자의 씨명 및 거주지를 기재해야 한다.

제6조: 총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 이외의 교파 또는 종파에 대하여 포교관리자를 두게 할 수도 있음. 전항에 의하여 포교관리자를 둘 때는 10일내로 제3조 제 1항 각호의 사실을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같다.

제7조: 전조의 포교관리자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행한다. 제3조 이외의 교파 또는 종파에서 그 규약 등에 의하여 포교 관리자를 둘 때는 제4조, 제5조 및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준행한다.

제8조: 종교 선포에 종사하는 자, 씨명을 변경하며 거주지를 이전하며 또는 포교를 폐지할 때는 10일 내로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9조: 종교의 용도로 쓰기 위하여 교회당, 설교소 또는 강의소의 류를 설립코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구비하여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설립하고자 하는 사유
2. 명칭 및 소재지
3. 부지의 면적 및 건물의 평수, 그 소유자의 씨명 및 도면
4. 종교 및 그 교파, 종파의 명칭
5. 포교 담임자의 자격 및 그 선정 방법
6. 설립비 및 그 지변(支辨) 방법
7. 관리 및 유지방법

전항 5호에 의하여 포교 담임자를 선정할 때는 설립자 또는 포교관리자는 그 씨명 및 거주지를 구비하고 이력서를 첨부

하여 10일 내로 조선총독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10조: 전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 7호의 사항을 변경코자 할 때는 그 사유를 구비하여 조선총독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종교의 용도에 쓰고자 하는 교회당, 설교소 또는 강의소의 류를 폐지할 때는 10일 내로 조선총독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포교 관리자 및 조선 사찰의 본사주지는 각 그 소속 사원, 교회당, 설교소 또는 강의소별로 매년 12월 31일 현재에 의하여 그 신도수 및 그 해에 신도의 증감수를 익년 1월 31일까지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전항의 신고는 포교관리자를 두지 않은 교파, 종파 및 조선의 사찰에 속하지 아니한 교회당, 설교소 또한 강의소에서는 각 그 포교 담임자로부터 신고해야 한다.

제13조: 포교관리자를 둔 교파, 종파에 속한 자 또는 조선의 사찰에 속한 자는 본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으며,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할 때는 포교관리자 또는 본사 주지의 부서(副署)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제9조 제1항 또는 제10조에 위반한 자는 백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15조: 조선총독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종교와 유사한 단체로 인정되는 것에 본령을 준용할 수도 있다. 전항에 의하여 본령을 준용할 단체는 이를 공고한다.

부칙

제16조: 본령은 대정 4년(1915) 10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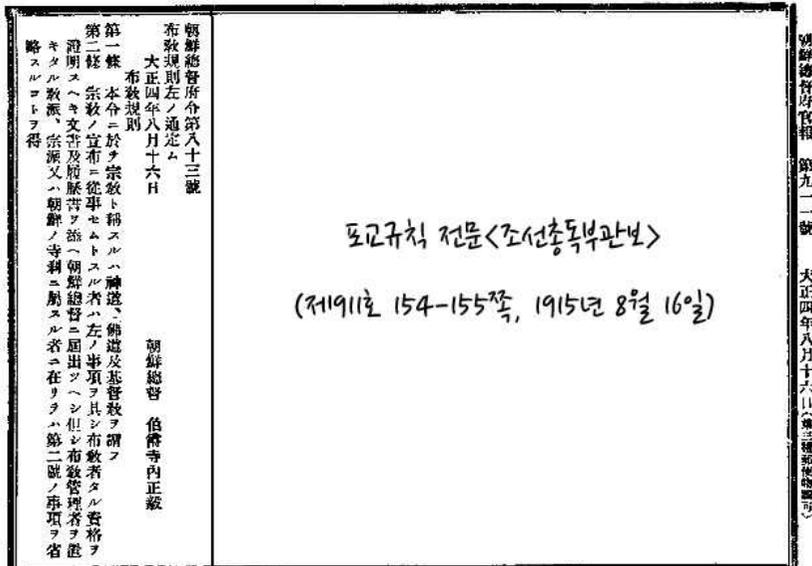
제17조: 명치 39년(1906) 통감부령 제45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18조: 명치 39년(1906) 통감부령 제45호 제1조,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자는 본령 제2조에 신고를 하며,

또는 제3조의 인가 혹은 제9조의 허가를 받은 자로 간주한다. 단 본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 제4호의 사항, 본령 제9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같은 조 제1항 제3호 제5호의 사항 및 포교 담임자의 씨명 및 이력을 구비하여 본령 시행일부터 3월내로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9조: 본령 시행에 제(際)하여 현재 종교선포에 종사하며 포교관리자를 두며 또는 종교의 용도에 쓰는 교회당, 설교소, 강의소의 류를 관리하는 자로서 전조에 해당치 아니하는 자는 본령 시행일부터 3월내로 제2조 제3조 또는 제9조의 사항을 구비하여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전항에 의하여 제9조의 사항을 신고하는 자는 본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간주한다.

3.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자료



一 宗教及其ノ教派、宗派ノ名稱
 二 教義ノ要領
 三 布教ノ方法
 前項各款ニ屬スル事項ヲ變更シタルトキハ十日内ニ朝鮮總督ニ届出ツヘシ
 第二條 神道各教派又ハ内地ノ佛道各宗派ニ於テ布教ヲ爲サムトスルトキハ其ノ教派又ハ宗派ノ管長、布教管理者ヲ定メ左ノ事項ヲ具シ朝鮮總督ノ認可ヲ受ケヘシ
 一 宗教及其ノ教派、宗派ノ名稱
 二 教規又ハ宗綱
 三 布教ノ方法
 四 布教管理者ノ權限
 五 布教者監督ノ方法
 六 布教管理事務ノ位置
 七 布教管理者ノ氏名及其ノ履歷書
 前項各款ノ事項ヲ變更シタルトキハ其ノ變更ヲ命スルコトヲ要ス
 第四條 朝鮮總督ハ布教ノ方法、布教管理者ノ權限及布教者監督ノ方法又ハ布教管理事務ノ位置ヲ認ムルコトヲ要ス
 第五條 布教管理者ハ毎年十二月三十一日ノ現在ニ依リ所屬布教者名簿ヲ作リ翌年一月三十一日迄朝鮮總督ニ届出ツヘシ
 前項ノ名簿ニハ布教者ノ氏名及居住地ヲ記載スヘシ
 第六條 朝鮮總督ニ於テ必要アリト認ムルトキハ第三條以外ノ教派又ハ宗派ニ對シ布教管理者ヲ置カシムルコトヲ要ス
 前項ニ依リ布教管理者ヲ置キタルトキハ十日内ニ第三條第一項各款ノ事項ヲ朝鮮總督ニ届出ツヘシ之ヲ變更シタルトキ亦同シ
 第七條 前條ノ布教管理者ヲ付テハ第四條及第五條ノ規定ヲ準用ス
 第三條以外ノ教派又ハ宗派ニ於テ其ノ規約等ニ依リ布教管理者ヲ置キタルトキハ第四條、第五條及前條第一項ノ規定ヲ準用ス
 第八條 宗教ノ宣布ニ從事スル者其ノ居住地ヲ移轉シ又ハ布教ヲ廢止シタルトキ十日内ニ朝鮮總督ニ届出ツヘシ
 第九條 宗教ノ用ニ供スル爲メ教會堂、說教所又ハ講義所ノ類ヲ設立セムトスル者ハ左ノ事項ヲ具シ朝鮮總督ノ許可ヲ受ケヘシ
 一 設立ノ要領
 二 名稱及所在地
 三 敷地ノ面積及建物ノ坪數、其ノ所有者ノ氏名及附屬
 四 宗教及其ノ教派、宗派ノ名稱
 五 布教擔任者ノ資格及其ノ選定方法
 六 設立費及其ノ支辨方法

七 管理及維持ノ方法
 前項第五條ニ依リ布教擔任者ヲ選定シタルトキハ設立者又ハ布教管理者ハ其ノ氏名及居住地ヲ具シ履歷書ヲ添ヘ十日内ニ朝鮮總督ニ届出ツヘシ之ヲ變更シタルトキ亦同シ
 第十條 前條第一項第二號乃至第七號ノ事項ヲ變更セムトスルトキハ其ノ事由ヲ具シ朝鮮總督ニ許可ヲ受ケヘシ
 第十一條 宗教ノ用ニ供スル教會堂、說教所又ハ講義所ノ類ヲ廢止シタルトキハ十日内ニ朝鮮總督ニ届出ツヘシ
 第十二條 布教管理者及朝鮮寺刹ノ本寺住持ハ各其ノ所屬寺院、教會堂、說教所又ハ講義所別ニ毎年十二月三十一日迄朝鮮總督ニ届出ツヘシ
 前項ノ届出ハ布教管理者ヲ付カサル教會堂、宗派及朝鮮ノ寺刹ニ屬セサル教會堂、說教所又ハ講義所ニ在リテハ各其ノ布教擔任者ヨリ届出ツヘシ
 第十三條 布教管理者ヲ置キタル教會堂、宗派ニ屬スル者又ハ朝鮮ノ寺刹ニ屬スル者本令ニ依リ許可ヲ受ケ又ハ届出ヲ爲サムトスルトキハ布教管理者又ハ本寺住持ノ副書ヲ添附スヘシ
 第十四條 第九條第一項又ハ第十條ニ違反シタル者ハ百圓以下ノ罰金又ハ科料ニ處ス
 第十五條 朝鮮總督ハ必要アル場合ニ於テハ宗教類似ノ團體ト認ムルモノニ本令ヲ準用スルコトヲ要ス
 附則
 第十六條 本令ハ大正四年十月一日ヨリ之ヲ施行ス
 第十七條 明治三十九年敕諭府令第四十五號ハ之ヲ廢止ス
 第十八條 明治三十九年敕諭府令第四十五號第一條、第二條及第三條ニ依リ認可ヲ受ケタル者ハ本令第二條ノ届出ヲ爲シ又ハ第三條ノ認可ヲ受ケハ第九條ノ許可ヲ受ケタル者ト看做ス但シ本令第二條ニ該當スル者ニ在リテハ同條第一項第二號ノ事項、本令第三條ニ該當スル者ニ在リテハ同條第一項第二號第四號ノ事項、本令第九條ニ該當スル者ニ在リテハ同條第一項第二號第五號ノ事項並布教擔任者ノ氏名及履歷ヲ具シ本令施行ノ日ヨリ三月内ニ朝鮮總督ニ届出ツヘシ
 第十九條 本令施行ノ際現ニ宗教ノ宣布ニ從事シ、布教管理者ヲ設キ又ハ宗教ノ用ニ供スル教會堂、說教所、講義所ノ類ヲ管理スル者ニシテ前條ニ該當セサルモノハ本令施行ノ日ヨリ三月内ニ第二條第三條又ハ第九條ノ事項ヲ具シ朝鮮總督ニ届出ツヘシ
 前項ニ依リ第九條ノ事項ヲ届出ツタル者ハ本令ニ依リ許可ヲ受ケタル者ト看做ス

朝鮮總督府官報 第九一號 大正四年八月十六日(第三號)發售

도교규칙 전문(조선총독부관보)(제91호 154-155쪽, 1915년 8월 16일)

改正 敎規 附 附 附

布教規則

第一條 本令ニ於テ宗教ト稱スルニ神

道佛道及基督教ヲ謂フ

第二條 宗教ノ宣布ニ從事スルニ

者ハ左ノ事項ヲ具シ布教者タル資格ヲ證

明スルニキ文書及履歷書ヲ添テ朝鮮總督

ニ屬出スルニ

一 宗教及其ノ教派、宗派、名稱

一 布教ノ方法

前項各條ノ事項ヲ變更スルニハ十日

朝鮮總督ニ屬出スルニハ氏名ヲ變更スルニ

一

一 移轉、又ハ布教ヲ廢止スルニキ亦同

第二條 神道各教派又ハ内地、佛道

各宗派ニ於テ布教ヲ爲サントスルニハ其

ノ教派又ハ宗派、管長ハ布教管理者ヲ

定メ左ノ事項ヲ具シ朝鮮總督ノ認可ヲ

受クニ

一 宗教及其ノ教派、宗派、名稱

二 教規又ハ宗制

三 布教ノ方法

四 布教管理者ノ權限

五 布教者監督ノ方法

六 布教管理事務所ノ位置

七 布教管理者ノ氏名及其ノ履歷書

1171

朝鮮各都、市、項、之、變、更、之、事、ハ、
朝鮮總督、認可ヲ受クヘシ
第四條 朝鮮總督ハ布教ノ方法、布教
管理者、權限及布教者監督ノ方法、又
ハ布教管理者、不適當ト認ムルコトアル
其、變更ヲ命スルコトアルヘシ

第五條 布教管理者ハ朝鮮ニ居住
スル者タルコトヲ要ス

第六條 朝鮮總督ニ於テ必要アリト認
ムルキハ第三條以外ノ教派又ハ宗派、對
シテ布教管理者ヲ置キタルコトアルヘシ
前項ニ依リ布教管理者ヲ置キタル
十日内ニ第三條第一項各都、市、項、ヲ

朝鮮總督ニ届出シヘシ之ヲ變更シ
キ亦同シ

第七條 前條、布教管理者ニ付テハ
第四條及第五條、規定ヲ準用ス
第三條以外ノ教派又ハ宗派ニ於テ其
規約等ニ依リ布教管理者ヲ置キタル
トスル第四條、第五條及前條第二項
ノ規定ヲ準用ス

第八條 削除
第九條 宗廟ノ用ニ併ニ為教會堂、
祝祭所又ハ講義所、類ヲ設キル所
ハ直ニ左ノ事項ヲ具シ朝鮮總督ニ届出
シヘシ

0172
111

- 一 名稱及其在池
- 二 宗教及其、教派、宗派、名稱
- 三 布教擔任者、資格及其、選定方法
- 四 設立管及其、支辨方法
- 五 管理及維持方法

前項各條、事項ヲ變更シタルトキ、其
、事由ヲ具シ直ニ朝鮮總督ニ届出シ

第十條 前條第一項第三條ニ依リ
布教擔任者ヲ選定シタルトキ、
布教管理者ヨリ其、氏名及位所ヲ具
シ、且、朝鮮總督ニ届出シ之ヲ變
更シタルトキ亦同シ

第十一條 宗教角、供スル教會堂、其
所又ハ講義所、類ヲ廢止シタルトキ、其
、事由ヲ具シ直ニ朝鮮總督ニ届出シ

第十二條 朝鮮總督、現ニ宗教、用
供スル教會堂、說教所又ハ講義所、
類ヲ於テ、安寧被テ存テ其、
所為アリト記シタルトキ、其、設立者又ハ
管照者、對シ之ヲ使用ヲ停止又ハ
止スルコトヲ得

第十三條 布教管理者ヲ置キタル教會
派、宗派、屬スル者又ハ朝鮮寺刹、屬
スル者本令ニ依リ、届出シ為サレタルトキ、
布教管理者又ハ本寺住持、副住持

第十四條 朝鮮總督、布教管理者、
布教擔任者又、朝鮮寺刹住持ニ對シ、
必ずト認ムル報告ノ提出ヲ命スルコトヲ
スルニシ

第十五條 朝鮮總督、必ずトシ場合ニ
於テ、宗教類似團體ト認ムルモノニ本
令ヲ準用スルコトアルニシ
前項ニ依リ本令ヲ準用スル團體ハ
之ヲ告示ス

第十六條 本令、大正四年十月一日ヨリ
之ヲ施行ス

第十七條 明治三十九年統監府令第四
十五號ニシテ廢止ス

第十八條 明治三十九年統監府令第
四十五號第一條、第二條及第三條
ニ依リ認可ヲ受ケタル者ハ本令第二
條ノ屆出ヲ爲シ又、第三條ノ認可若
シテ第九條ノ許可ヲ受ケタル者ト看做
ス但シ本令第二條ニ該當スル者ニ在リ
テハ同條第一項第二號ノ事項、本
令第三條ニ該當スル者ニ在リテハ同條
第一項第二號第四號ノ事項、本令
第九條ニ該當スル者ニ在リテハ同條第
一項第二號第五號ノ事項並布教

0174
分

權任者、氏名及履歷ヲ具シ奉命
行、日ヨリ三月内、朝鮮總督ニ届出
ツヘシ

第十九條 本令施行、際現ニ宗報、宣
布ニ従事シ、布教管理者ヲ置キ又ハ
宗教、用ニ供スル教會堂、施設所、講
義所、類ヲ管理スル者ニシテ前條ニ該
當ニナルモノ、本令施行、日ヨリ三月
内ニ第二條第三條又ハ第九條ノ事
項ヲ具シ朝鮮總督ニ届出ツヘシ
以テ別項ニ依リ第九條ノ事項ヲ届出
シ者、本令ニ依リ許可ヲ受ケタル者ト
看做ス

0175

14

朝鮮總督府 宗敎司 宗敎司 宗敎司
布敎總期 永 布敎局 布敎司 布敎司
理者設置屬 布敎所設置屬 樣式立
通改正

第一號樣式

今般宗敎，宣布。從事政務間別
資格證明書及履歷書相添。左記事項
具此段及御屬候也

年 月 日

住所

氏名
年 月 日生

朝鮮總督府 氏名殿

一 宗敎及其 敎宗派 名稱
布敎 方法

本敎所 教之 布敎 總 宗敎 家庭律道 通信
本 人 姓名 記 載 不 入 籍 所 屬 宗敎 派 記 載 不 入

備考

本 總 督 府 宗 敎 司 何 之 宗 敎 宗 派 所 屬 宗 敎 派 則 現
在 事 務 上 之 宗 敎 者 凡 之 宗 敎 宗 派 上 宗 敎 宗 派 則 現
布 敎 官 理 者 又 本 寺 住 持 則 書 入 屬 出 人 法 院

0176

何

- 六 布教方法
- (第一節様式同之)
- 四 布教管理者ノ權限
- 六 布教者監督ノ方法
- 六 布教管理事務所ノ設置
- 七 布教管理者ノ氏名
- (履歴書、第一節様式ニ依リ別紙ニ記ス)

0178 4

備考

注(申請書)地方廳ノ經由ニ直接本府提出

第三節様式

布教管理者設置届

今般布教管理者ノ設置發候ニ付布教
 規則第七條第二項ニ依リ本記事項ノ具
 此段及御届候也
 年 月 日

住所

朝鮮總督府氏名殿

氏 名 (印)

(第二節様式同之)

第四種樣式

布教所設置屬

個級教會堂(說教所或講義所)之設置
候間在寬事項(早之及御屬候也)

年 月 日

住所

朝鮮總督府(津波譯者)但持其他布教上(身台)氏名(印)
朝鮮總督府 氏名 殿

一 名稱

二 所在地

三 宗教及其教派、宗派、名稱

四 布教結任者、員資格及其選定方法

五 教士費及其支辨方法

六 管理維持方法

1401 0178